

#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89,018,963	26,670,569
일반회계	858,079,882	25,742,396
특별회계	30,939,081	928,172
공기업특별회계	17,298,317	518,950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7,298,317	518,950
기타특별회계	13,640,764	409,223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0,100	1,203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85,000	2,55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78,028	29,341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87,920	5,638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3,572,834	107,185
수질개선 특별회계	6,773,994	203,220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2,002,888	60,08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741,65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7,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